

#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영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04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유광상, 김인호, 황준환,  
김상훈, 최판술, 김제리,  
이복근, 장인홍, 강구덕,  
김혜련, 송재형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지진재해대책법」이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를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로 변경함(제1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”를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,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진·화 산재해대책법」 제21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